

NFT의 거래·유통 관련 규제 현황과 입법적 개선 과제

김명아

NFT의 거래·유통 관련 규제 현황과 입법적 개선 과제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연구위원

요약문

S U M M A R Y

- 블록체인기술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자산의 유형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NFT의 활용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NFT의 생성 및 거래·유통에는 NFT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진 생성자와 NFT 생성을 대행하는 민팅서비스 제공자, NFT 보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갑사업자(가상자산보관업자), NFT 거래·교환을 중개하는 유통플랫폼, 저작물로서의 NFT에 대한 판매·수익·처분 등에 대한 권리를 모두 인수하여 직접 매매에 관여하는 NFT 판매인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게 됨
- NFT는 데이터 값으로서의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NFT가 표창하는 권리는 NFT가 진본·원본을 증명함으로써 그 고유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 NFT 자체의 물건성은 현행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상태임
- 특정금융정보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데이터산업법, 게임산업법, 「저작권법」 등 다양한 법률의 우회적인 적용을 통하여 NFT의 속성과 법적 지위를 파악할 수 있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NFT 거래·유통 활성화에 불리한 측면이 있으며, 향후 「민법」 개정을 통하여 NFT의 물건성 인정 및 NFT 관련 별도 입법을 통하여 NFT의 생성·거래·유통 참가 당사자 간의 법적 지위와 관련 법률관계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채택해야 할 것임
- NFT의 생성·거래·유통에서는 미리 프로그램된 스마트 컨트랙트에 따르게 되므로, 코드

설계 단계에서부터 취소의 의사표시와 계약의 해제·변경, 원상회복 등 다양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거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또한, NFT 생성·유통 과정에서 NFT 인수 계약에 해당 NFT가 표창하는 대상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의 양수나 이용허락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법률관계와 당사자의 지위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NFT 생성·거래 시 스마트컨트랙트에 관련 권리 관계를 사전에 정하여 프로그래밍할 필요가 있음
- DAO의 설립과 자금조달, 의결권 행사, 운영자그룹과 단순투자자 간 책임과 법률관계, 자금청산·해산, 예외 규정 등을 채택하고, 그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여 DAO 참가자 및 NFT의 거래·유통 상대 당사자를 모두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NFT 생성 및 거래·유통과 관련하여, DAO 법적 지위와 법률관계 등에 대한 논의 상황에 따라 각 NFT의 유형별로 권리행사의 주체 및 효력 부인과 선관주의의무 등 관련 법률관계의 효력에 대해 논의를 이어나가야 할 것임
- 블록체인·NFT 기술, 계약서 및 저작권 표기 등 권리관계와 법적 근거 등의 내용을 포함한 표준 계약서 작성의무를 채택하고, 해당 표준계약 방식의 계약 체결시 약관규제법상의 원칙에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음
- NFT가 가지는 디지털자산으로서의 속성 뿐만 아니라, 예술품 거래·유통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의 확장 측면과 Web3.0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NFT와 관련한 규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

NFT의 거래·유통 관련 규제 현황과 입법적 개선 과제

목차

C O N T E N T S

NFT의 거래·유통 관련 규제 현황과 입법적 개선 과제

I. 서언	07
1. NFT의 개념과 기술적 특성	07
2. NFT와 블록체인, 메타버스 생태계와의 관련성	08
3. NFT의 거래·유통에 관한 법리 검토와 규제 개선의 필요성	10
II. NFT의 거래·유통 관련 당사자 간 법률관계와 보호 범위	13
1. NFT 민팅과 저작자의 저작권격권 및 저작재산권의 보호	13
2. NFT의 특성에 따른 법적 성격과 NFT 관련 계약 체결의 효력	14
3. NFT 인수인의 권리와 권리의 유형	16
4. NFT에 대한 게임물 내지 가상자산 규제 적용 가능성	23
5. NFT 거래·유통 참가자와 DAO, OSP 등의 책임	24
III. NFT의 거래·유통 원활화를 위한 규제 개선 과제	29
1. NFT의 「민법」상 물건성 판단 기준 및 배타적 지배권 등 물권적 권리의 적용	29
2. NFT 디지털작품에 대한 보호 범위 구체화	30
3.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권리 강화	31
4. NFT의 자산성과 유형별 기준 명확화	32
5. NFT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입법 논의 대상 확대	33
6. NFT 거래와 유통에 관한 표준계약서의 마련	33
IV. 결어	35
참고문헌	36

I. 서언

1. NFT의 개념과 기술적 특성

□ NFT(Non-Fungible Token)은 국내에서 “대체 불가능 토큰” 내지 “각각 고유의 값을 가진 토큰” 등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서로 동일한 가치로 거래할 수 있는 기존의 가상자산(비트코인, 이더리움 등)과 비교하여 그 개념이 소개되어 왔음

- NFT란 “대체 불가능 토큰”으로서, 기술적으로는 “토큰마다 고유의 값을 가지고 있어 A토큰을 B토큰으로 대체할 수 없는 토큰”으로 소개되고 있음¹
- 다만, 실무상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만든 “대체 불가능성을 가진 토큰”²으로서의 NFT는 특정한 권리나 가치를 표창하는 일정한 데이터값으로서의 의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법리적으로는 아직까지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임

□ 블록체인기술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자산의 유형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NFT의 활용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아래의 [표 1]은 디지털자산의 형태별로 구분한 것이며, 이에 대한 NFT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표임

1 민경식·김관영·박진상, 「NFT 기술의 이해와 활용, 한계점 분석」, KISA Insight Vol.3., 한국인터넷진흥원, 2021.9.10., 13면.

2 유민호·임동민·아군·한서희, 「NFT 투자의 정석」, 한스미디어, 2022, 18면.

[표 1] 디지털자산의 유형과 NFT 기술의 적용 가능성

현금 대체 디지털 자산	디지털 캐쉬	마일리지 포인트
	쿠폰, 기프트콘	로열티 포인트
	디지털 상품권	
디지털 세상의 아이템	게임 아이템	디지털 가상 제품(의상, 패션아이템 등)
	메타버스플랫폼의 아바타	디지털트윈상 가상 건축물 및 가상 토지
암호화폐	비트코인	유틸리티 코인
	이더리움	STO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금융자산	디지털 금융자산(전자증권, 금 등)	
저작권	디지털콘텐츠 및 데이터셋	
	실물 소설, 만화, 그림 등의 디지털화	
소유권 증명	부동산·자동차·선박 등 실물자산 원본증명 (소유권/사용·수익권 등에 대한 원본증명)	
데이터	거래증명기록,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데이터산업법상 데이터 등	

- NFT와의 관련성 평가

: 모든 디지털자산 내지 데이터값은 NFT로 발행될 수 있거나 해당 디지털자산에 대한 원본증명으로서의 NFT로 발행될 수 있음

출처: 민경식·김관영·박진상, 『NFT 기술의 이해와 활용, 한계점 분석』, KISA Insight Vol.3., 한국인터넷진흥원, 2021.9.10., 13면의 그림을 수정·보완하여 표로 작성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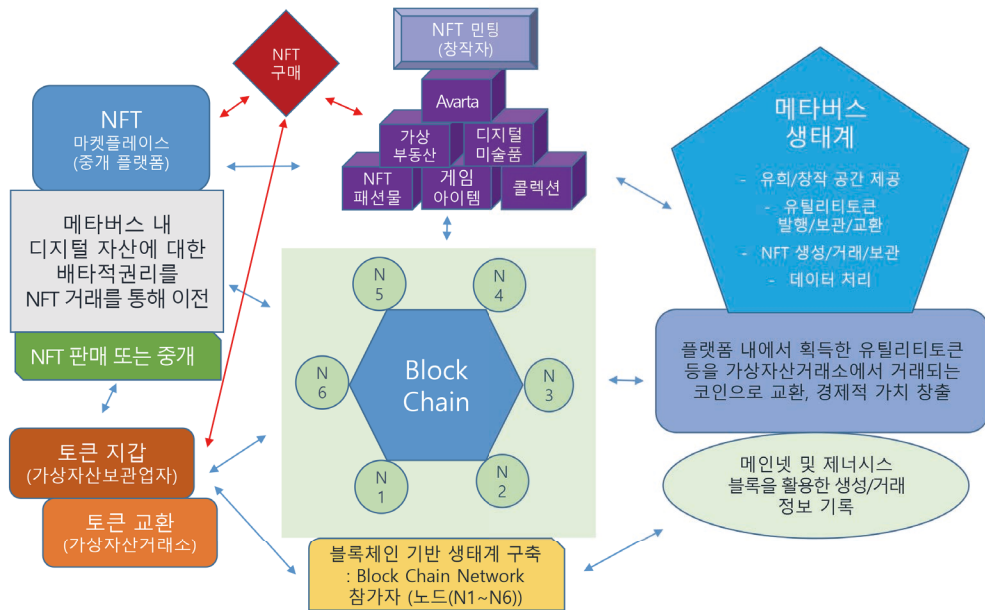
2. NFT와 블록체인, 메타버스 생태계와의 관련성

□ NFT의 생성 및 거래·유통에는 NFT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진 생성자와 NFT 생성을 대행하는 민팅서비스 제공자, NFT 보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갑사업자(가상자산보관업자), NFT 거래·교환을 중개하는 유통 플랫폼, 저작물로서의 NFT에 대한 판매·수익·처분 등에 대한 권리를 모두 인수하여 직접 매매에 관여하는 NFT 판매인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게 됨

-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으로 실물 부동산 권리 이전의 이력관리, 계약서 및 등기부 정보(데이터)를 기록한 NFT를 생성하고, 부동산 원 소유자(NFT로 증명되는 권리의 원 소유자)의 지갑(가상자산보관업자가 제공하는 보관서비스)에서 NFT 구매자의 지갑으로 이전되었음을 증명하는 분산형장부기록 방식의 데이터값을 통해 NFT 간 거래가 일어나며, 소유권 이전 정보 등이 퍼블릭 블록체인 메인넷과 연동된

- 공시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업로드 되면, 거래 참가자가 부동산 정보, 계약 내용, 거래 정보 등을 열람(참여자 인증 필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음³
- 최근 Web 3.0과의 관련성을 통하여서도 NFT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으며, 해당 NFT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지는 창작자로서의 생성자, NFT 생성을 대행하는 민팅서비스 제공자, NFT 보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갑사업자(가상자산보관업자), NFT 거래·교환을 중개하는 유통플랫폼, 저작물로서의 NFT에 대한 판매·수익·처분 등에 대한 권리를 모두 인수하여 직접 매매에 관여하는 NFT 판매인(해당 NFT의 콘텐츠 창작자와 판매자는 동일인이 아닐 수도 있으며, 이 때 NFT 생성 전 계약을 통하여 법률관계를 정하여야 할 것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게 됨
 - 아래의 [그림 1]은 이러한 NFT의 생성·거래·유통 프로세스와 블록체인/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 간 역할과 구조에 관하여 도식화한 것임

[그림 1] NFT의 생성·거래·유통 프로세스와 블록체인/메타버스 생태계 구조



출처: 연구자 작성

3 민경식·김관영·박진성, 「NFT 기술의 이해와 활용, 한계점 분석」, KISA Insight Vol.3., 한국인터넷진흥원, 2021.9.10., 26면

3. NFT의 거래·유통에 관한 법리 검토와 규제 개선의 필요성

□ NFT는 데이터 값으로서의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NFT가 표창하는 권리는 NFT가 진본·원본을 증명함으로써 그 고유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 NFT 자체의 물건성은 현행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상태임

- 블록체인기술 기반의 NFT는 특정 NFT가 표창하고 있는 권리에 대한 원본증명 수단으로 작용하고, 해당 권리는 배타적 지배권이나 처분·수익권 등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현행 「민법」은 현재까지 데이터 등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유형과 법적 지위에 대한 입법적 근거는 마련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 현행 「민법」 제98조에서는 “물건”의 정의에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서 물건에 관한 법률관계를 정하는 물권적 권리 즉, “소유권” 등의 다양한 권리 적용이 어려움

*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 현행 「민법」, 「상법」, 자본시장법, 벤처투자촉진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어디에서도 데이터나 NFT 등의 가상자산을 현물출자의 대상으로 보아 규율하고 있는 규정이 없음
- 다만, 데이터 등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 따른 데이터(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 또는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서 보호의 대상이 됨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업자 등은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거나(제1항),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위반하는 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그 밖에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청구할 수 있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제5조)를 할 수 있음

**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데이터에 대한 보호가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보다 더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판단됨. 다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데이터에 대한 사용·공개가 가능하다는 반대해석이 가능하며, 그 법률관계가 확정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데이터 거래 계약을 통하여 데이터의 사용 및 공개 권한을 취득한 자가 데이터 가공 등 처리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 유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것도 금지됨

-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데이터 보호 규정은 “데이터”의 자산으로서의 부가가치 창출 및 산업 활성화에는 불리한 측면이 있음. 특히, NFT의 법적 지위를 “데이터”로 해석하는

경우,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NFT에 관하여서는 “NFT 거래 계약” 등에 해당 NFT의 사용·공개 또는 제3자 제공 등 수익 창출 가능성에 대하여 상세하게 유형별로 수익배분 관계를 명확하게 정하여 포함해 두어야 할 것임

□ 아래에서는 이러한 NFT의 특성에 따른 NFT의 법적 지위와 NFT의 거래 당사자 간 권리 등을 살펴보고, NFT의 거래·유통 원활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메타버스 생태계나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에 대한 논의는 각각의 주제별로 다양한 법적 이슈를 포함하고 있는 바 다른 기회를 통하여 관련 법리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함
- 또한, 아래에서는 NFT의 거래·유통 활성화 측면에서의 논의를 위주로 하므로 NFT 자체의 증권성이나 가상자산성 등에 대한 금융법제상의 법리 검토는 제외하기로 함

II.

NFT의 거래·유통 관련 당사자 간 법률관계와 보호 범위

1. NFT 민팅과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의 보호

□ NFT와 관련하여, 초상권과 관련한 유형의 NFT의 경우, 초상권의 이용과 책임 및 이익 귀속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없이 유명인 등의 초상을 이용하거나 특정이 가능한 형태의 디지털콘텐츠 작품을 제작하고, 해당 디지털콘텐츠를 NFT 민팅하여 판매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 NFT는 그 특성상, 해당 디지털콘텐츠의 진본성을 증명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나 민팅 기법에 따라 사전에 초상권 내지 퍼블리시티권의 내용을 사전에 코딩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초상에 대한 이용의 허락이 없는 경우 해당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NFT의 생성(민팅)이나 거래 시, 초상권 침해 문제가 생기게 되며, 초상권자가 아닌 NFT 생성자나 판매자에게 수익이 귀속되는 구조를 가질 수 있음
- 미술저작물인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35조 제1항 본문),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인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으며(「저작권법」 제35조 제4항), 이는 해당 NFT 민팅 대상인 디지털콘텐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임

□ 대체불가능성을 기본 특성으로 하는 NFT는 ‘원본’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NFT를 활용한 지식재산권 등록 연계 및 원본증명서비스 제공 가능성이 있음

- 기존의 비디지털화된 저작물을 NFT화하는 과정에서 무권리자에 의한 NFT 민팅 사례가 있어 NFT 저작물과 원 저작물에 대한 각각의 권리가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새로운 디지털 저작물로서의 NFT 민팅에 대하여서는 NFT 생성 단계에서부터 권리자에 대한 원본증명이 가능해지므로, 이를 활용한 등록이 활성화 되는 경우, NFT 저작자는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누릴 수 있을 것임

-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원본증명과 관련하여, 특허청의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진본·원본 인증 기능을 NFT를 활용하여 서비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등록 정보에 관하여 NFT 민팅 시, 스마트컨트랙트에 NFT 이용·판매 등에 대한 수익 등 권리·의무 관계를 세부적으로 정함으로써 창작자 등 관련 권리보유자의 법적 지위와 NFT 유통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2. NFT의 특성에 따른 법적 성격과 NFT 관련 계약 체결의 효력

(1) NFT의 민법상 지위와 소유권 인정 여부

- NFT는 데이터값으로 표현되는 무체물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현행 「민법」상 “물건”의 정의에 따른 법적 지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⁴
- 국내 판례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하여 디지털정보로서 「민법」상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서울고등법원 2021. 12. 8. 선고 2021나2010775 판결)
 -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하고 있어, 무체물 중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에 대하여서만 물건성을 인정함
 - “물건”에 대하여서는 ‘소유권’, ‘점유권’ 등이 인정되며(「민법」 제192조, 제211조, 제213조, 제214조, 제262조 등), NFT가 「민법」상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절대적·배타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소유권을 NFT에 대하여서도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
- NFT 생성·유통과 관련한 실무에서는, NFT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NFT는 「민법」상 소유권의 객체인 “물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그러나, 최근 데이터나 NFT 등의 자산성에 대하여서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NFT와 관련하여서는 그 대체불가능성이나 배타적 지배권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사용·수익·처분에 관하여 “소유권”의 행사와 유사한 형태의 권리 관계가 형성됨
 - 다만, 데이터 값으로서의 NFT 자체에 대한 사용·수익·처분 등 배타적 권리와 NFT가 표창하는 대상

4 최정규, “디지털전환과 NFT, 선제적 규제개선 사항에 관한 소고”, 『신산업규제법제리뷰』 제22-5호, 한국법제연구원, 2022. 10.31., 6면; 최경진, “데이터와 사법상의 권리, 그리고 데이터소유권(Data Ownership)”, 『정보법학』 제23권 제1호, 한국정보법학회, 2019.4., 226면 등

자체(디지털콘텐츠로서의 디지털미술품이나 가상부동산, 게임아이템 등과 현실에서의 작품이나 대상/권리) 등에 대한 사용·수익·처분 등 배타적 권리나 지식재산권, 인격권, 채권 등의 법률관계는 구분하여 계약을 구성하여야 할 것임

(2) NFT 생성·거래·유통 관련 스마트컨트랙트의 효력

□ 기존에 계약의 체결은 당사자간의 '청약'과 '승낙'을 통하여 성립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최근 블록체인지술 기반의 스마트컨트랙트 사례가 늘면서 이러한 스마트컨트랙트의 활용 가능성과 그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 NFT는 NFT가 표창하는 대상 권리(디지털콘텐츠 등)에 대하여, 미리 코딩된 조건에 따라 프로토콜이 이행되며, 디지털콘텐츠의 속성에 관한 메타데이터에 대하여 디지털콘텐츠 관련 권리자 정보, 권리·의무 관계 등 사전에 설계된 스마트컨트랙트에 따라 자동으로 실행됨
- 블록체인기술 기반의 스마트컨트랙트는 비가역적 특성을 가지므로, 종전 스마트컨트랙트를 '해제'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사전에 코딩한 조건대로 자동으로 해당 스마트컨트랙트가 실행되기 때문에 '무효'나 '계약의 변경'도 어려운 한계를 가짐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청약 철회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철회권을 인정하고 있으나,⁵ 블록체인기술 기반의 NFT의 스마트컨트랙트와 관련하여서는 청약의 철회가 인정되기 어려움
- NFT가 표창하는 대상물이 「민법」상의 '물건'이거나 유형저작물인 경우 해당 대상물과 NFT의 관계는 디지털인증 수단 및 권리의 표창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게 되고, 해당 NFT의 구매 계약은 해당 대상물의 원본 증명 및 NFT 민팅 조건별로 인정된 채권적 권리를 인수하는 효력을 가지게 될 것임
- 다만, NFT가 표창하는 대상물이 메타버스 등의 플랫폼에서 디지털콘텐츠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NFT의 인수는 해당 디지털콘텐츠의 원본 증명 및 채권적 권리 뿐만 아니라 적용된 블록체인기술의 유형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관련 권리·의무의 범위 자체가 특정되는 NFT로서 작동할 수도 있을 것임

5 정영훈, "NFT(대체불가능토큰) 관련 주요 동향과 소비자 이슈", 『소비자정책동향』 제122호, 한국소비자원, 2022. 10면.

3. NFT 인수인의 권리와 권리의 유형

(1) 「저작권법」상 인수인 및 저작자의 권리

□ NFT가 표창하는 대상이 미술저작물등인 경우, 「저작권법」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에 따라 NFT 인수인은 미술저작물(유형물)의 원저작자나 소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원본을 전시할 수 있고, 해당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도록 등)가 가능함

- 다만, NFT가 표창하는 대상이 디지털콘텐츠인 NFT 아트 작품에 대하여서는 「저작권법」상의 미술저작물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서 불명확한 점이 있음

* 기존에 미술저작물을 일반인의 관람에 제공할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저작권법」 제35조에서는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시’의 범위가 법률상 불명확하며,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서의 향시 전시는 전시 또는 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도의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임⁶

□ NFT 중개플랫폼 등 온라인에서 NFT 형태로 발행된 미술저작물(NFT 아트)의 경우, 이미지 전시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해설이나 소개를 위한 NFT 미술저작물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현행 「저작권법」상 ‘전시’인가에 대한 적용 여부가 불명확함⁷

- 해당 NFT 복제나 디지털도록 등의 배포와 관련하여 해당 ‘배포’ 행위가 현행 「저작권법」상 ‘전시’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전시’ 기타 다른 개념과 유사하게 해석할 수 있을지 등 법 적용 가능성이 모호함

* 「저작권법」제35조 제3항에서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복제하여 배포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 유형물 형태의 미술저작물 소유자와 NFT 작품 구매자 간 다른 지위를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실익이 없는 한, 원본의 ‘전시’를 위한 권리자 동의 규정과 디지털도록 방식의 복제·배포 등의 게시 행위의 허용 등 법적 지위를 동일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음

6 미술저작물등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 등의 유형물을 일반인이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을 “전시”로 해석하고 있는 판례(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도 있으나, 홈페이지나 온라인플랫폼, SNS프로필 등에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미술저작물이나 복제물의 진열, 게시 등 “전시”에 해당하는가는 불명확함

7 최정규, “디지털전환과 NFT, 선제적 규제개선 사항에 관한 소고”, 『신산업규제법제리뷰』 제22-5호, 한국법제연구원, 2022. 10.31., 10면

□ 또한, NFT 생성·유통 과정에서 NFT 인수 계약에 해당 NFT가 표창하는 대상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재산권의 양수나 이용허락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법률관계와 당사자의 지위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NFT 생성·거래 시 스마트컨트랙트에 관련 권리 관계를 사전에 정하여 프로그래밍할 필요가 있음

- 한편, NFT 구매자가 가상자산지갑을 이용하여 해당 NFT를 보관하는 경우, 진본·원본 인증 수단인 NFT가 표창하는 권리 대상인 해당 디지털콘텐츠를 별도로 저장(다운로드)하고, 이를 개인의 SNS프로필이나 배경화면에 이용하는 경우 또는 해당 디지털콘텐츠를 활용하여 새로운 디지털콘텐츠 제작에 이용하는 경우 등도 발생할 수 있음
- NFT 구매자는 해당 디지털콘텐츠의 이용행위가 NFT의 원본·진본으로서의 가치하락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저작권법」에 따라 해당 NFT가 표창하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의 양수나 이용허락에 대하여서 그 권리의 범위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NFT 구매자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도 있음
- 「저작권법」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저작권자는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등 저작재산권을 갖게 되며, 이를 이용하려는 자는 해당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양수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아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이 가능함
- 「저작권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이용허락 받은 저작물에 대한 이용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NFT 재판매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이 있어야만 재구매자의 이용 권리가 승계될 수 있다는 결과로 해석됨
- 「저작권법」 제20조에서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저작자의 배포권이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소진의 원칙이 NFT방식으로 발행된 저작물에 대하여서도 적용되는가에 대하여서는 아직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⁸(판례는 배포의 개념에 온라인상의 무형적 전달 행위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 따라서, 이용 행위의 영리/비영리성과 공개/비공개 여부에 따라 단순 개인 소장용 목적의 비영리·비공개와 아바타나 프로필사진 등과 같은 비영리·공개 이용, 판매를 위한 디지털도록 등의 제작과 같이 보조적 상행위로서의 영리·공개 이용, 판매용 콜라보방식 디지털아트 제작을 위한 영리·공개 이용 등 다양한 경우에 대하여 각 권리 당사자에 대한 권리의 범위와 이용 조건, 책임 사항 등 구체적이고 상세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NFT의 생성·거래·유통 각 단계별로 스마트컨트랙트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8 최정규, “디지털전환과 NFT, 선제적 규제개선 사항에 관한 소고”, 「신산업규제법제리뷰」 제22-5호, 한국법제연구원, 2022. 10.31., 10~12면; 김찬동 외, “메타버스, NFT 저작권 쟁점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11., 122~130면.

- 「저작권법」에는 저작재산권의 종류(제16조~제22조)를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 규정하여 두고 있으나, 저작자에게 “추급권(Droit de suite)”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음. 그러나 향후 NFT 미술품 등의 스마트컨트랙트 프로그래밍에 이러한 추급권을 설계함으로써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베른협약(1948)⁹이나 EU 재판매권 지침(2001)¹⁰, EU 재판매권 규칙(2006)¹¹ 등을 통하여 채택된 추급권은 예술품의 거래가 성립된 이후 해당 예술품의 재판매에 따라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창작자가 그 수익의 일부를 요구하여 추급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일종의 ‘재판매 보상청구권’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창작자가 NFT 작품을 드롭할 때, 해당 발행자인 저작자에게 일정 비율의 수익이 발생하도록 프로그래밍하고, 최초 거래 이후에도 재판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자동으로 저작자에게 일정한 수익금이 지급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하여 창작자의 지위와 권한이 강화되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상표법」상의 권리

- 최근 NFT 작품에 타인의 등록 상표가 이용되는 경우, 해당 NFT가 표창하는 디지털콘텐츠의 제작과 발행에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있음
- 2022년 2월 3일 개정된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는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수출·수입하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디지털환경에서의 상표 이용에 대하여서도 “상표의 사용”을 적용하고 있음
 - 다만, 상표권 침해로 보는 행위는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상표법」 제108조 제1항), 타인의 상표를 디지털콘텐츠의 제작과 발행에 이용한 행위가

9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1928)(<https://www.wipo.int/treaties/en/ip/berne/> 2022.11.30. 최종검색)

10 Directive 2001/8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September 2001 on the resale right for the benefit of the author of an original work of art(2001)(<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01L0084> 2022.11.30. 최종검색)

11 S.I. No. 312/2006 - European Communities (Artist's Resale Right) Regulations 2006(<https://wipolex-res.wipo.int/edocs/lexdocs/laws/en/ie/ie141en.pdf> 2022.11.30. 최종검색)

상표적 사용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 상품의 유사성이나 일반인의 오인·혼동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 현실 상품과 디지털콘텐츠에 그 유사성이나 오인·혼동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것임
- NFT 생성자 또한 장래에 본인의 상표권 보호를 위하여 NFT가 표창하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상표권의 등록이 필요할 것임

(3)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권리

□ NFT와 관련하여, NFT가 표창하는 디지털콘텐츠의 제작에 타인의 성명·상호·상표를 이용하거나 상품의 용기·포장 등 상품표지를 이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라 상품주체에 대한 혼동초래행위가 될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함

□ 한편, NFT 자체는 데이터 값으로 표현되므로,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데이터(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서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가.~차. (생략)</p> <p>카.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業)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기망·부정접속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수입·수출·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타.~파. (생략)</p>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업자 등은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거나(제1항),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위반하는 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그 밖에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청구할 수 있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제5조)를 할 수 있음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제6조), 특허청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정경쟁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표지 등의 제거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음(제8조)
- 법 제2조 제1호 카목에 따라 “데이터”로 보호되는 경우에는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모두 부정경쟁행위가 됨. 즉,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에 대한 입증 필요함
- 법 제2조 제2호 등에 따라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 선의자 특례에 따라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보호 조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특히, 영업비밀 취득 당시에 부정 공개 사실이나 부정취득행위, 부정공개행위 개입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충분함. 또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날로부터 3년,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함
-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데이터에 대한 보호가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보다 더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판단됨. 다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데이터에 대한 사용·공개가 가능하다는 반대해석이 가능하며, 그 법률관계가 확정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데이터 거래 계약을 통하여 데이터의 사용 및 공개 권한을 취득한 자가 데이터 가공 등 처리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 유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것도 금지됨
-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데이터 보호 규정은 구체성이나 명확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디지털자산으로서의 데이터나 NFT 등 다양한 디지털경제재의 활용과 발전에는 불리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특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데이터의 유형별로 “데이터 유형별(NFT/

FNFT/데이터셋 등 디지털 자산 유형별) 거래 계약”에 데이터의 사용·공개 또는 제3자 제공 등 수익 창출 가능성에 대하여 상세하게 유형별로 당사자간 지위와 권리 유형, 수익배분 관계를 명확하게 정하여 포함해 두어야 할 것임

(4)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 및 지식재산권

□ NFT나 NFT가 표창하는 권리의 대상인 디지털콘텐츠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각의 담보권 대상이 되는가와 관련하여, 현행 법률 체계상, NFT나 NFT가 표창하는 권리의 대상인 디지털콘텐츠 모두 채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으로서 자금조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채권담보법)은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입법 목적을 가지고 제정됨(제1조)
- 동산채권담보법 제2조 제9호에서는 담보목적물(동산,채권,지식재산권)에 대한 물상보증인,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채무자 등”으로 규정하고, 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에서 제외되는 증권에 무기명채권증서와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증권,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을 규정하고 있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민법상 NFT 등의 데이터 값이나 가상자산은 “유체물”이 아니고, “무체물”이므로 “동산”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고, 현행 법체계 내에서 NFT나 디지털콘텐츠는 「민법」상 채권 또는 지식재산권 대상이 될 뿐임

* 「민법」 제99조(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 [대법원예규]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에 따라 특정이 가능한 “동산”이라 하더라도, 「민법」 제98조 및 제99조 규정에 따라, NFT 등은 물건의 법적 지위를 가지지 못함

*** 데이터가 저작권법상 지식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 지식재산권 내지 지식재산권이용료채권의 객체가 되고, 지식재산권 외의 “채권”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기타 채권”에 해당할 것임(「동산·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표 제1호]에 따라 “부동산매매대금채권, 동산매매대금채권, 기타 매매대금채권, 부동산담보대출채권, 금융기관대출채권, 신용카드대금채권, 기타 대여금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차입채권, 공사대금채권, 기타 수급인의 보수채권, 수입료채권, 보관료채권, 지료채권, 전세금반환채권, 보험금채권, 보험료채권, 중개료채권, 운송료(운임)채권, 리스료채권, 지식재산권이용료채권, 진료비채권, 서비스이용료채권, 기타 채권”으로 분류됨

- 지식재산권담보권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질권 설정이 가능한 지식재산권으로 한정되며, NFT가 표창하는 디지털콘텐츠가 저작물로서 저작재산권을 가지게 되므로, 지식재산권담보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 지식재산권담보권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담보약정에 따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등 지식재산권[법률에 따라 질권(質權)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목적으로 그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등록한 담보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저작권법」 제2조 제7호 및 제17호, 제19호 등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는 편집물(“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로서의 데이터베이스와 그 밖의 데이터베이스(“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등을 의미함

(5)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데이터자산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상 NFT는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데이터”의 정의에 부합함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데이터”란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p> <p>(이하, 생략)</p> <p>제12조(데이터자산의 보호) ① 데이터생산자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이하 “데이터자산”이라 한다)는 보호되어야 한다.</p> <p>② <u>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데이터자산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취득·사용·공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자산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제거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 데이터자산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데이터생산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③ 제2항에 따른 데이터자산의 부정사용 등 행위에 관한 사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p>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경제재로서의 데이터를 데이터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자산의 개념에는 NFT나 NFT가 표창하는 대상인 디지털콘텐츠가 모두 포섭되어 보호의 대상이 됨

(6) 「상법」상 상사유치권의 대상

□ NFT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사업자인 경우, 영업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상법」의 각 규정이 적용되며, 이 경우,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게 됨

- * 「상법」 제58조(상사유치권)에서는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사실상의 유가증권으로 파악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유틸리티형 토큰이나 자산준거형 토큰은 상인성을 가지는 NFT 생성/거래 과정의 참가자나 NFT 인수인에 대하여서는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변제를 위한 상사유치권의 대상에 자산적 가치가 있는 NFT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다만, NFT가 디지털콘텐츠의 권리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는가에 대하여서는 아직까지 논의나 활용 방안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 NFT나 FNFT는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373조나 채권 양도 가능성을 규정한 제449조, 제508조에서 제525조 지시채권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해당 규정들의 적용에 대하여 블록체인기술 기반의 NFT 특성이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임

4. NFT에 대한 게임물 내지 가상자산 규제 적용 가능성

□ 오락성을 가진 메타버스 생태계 내에서 발행하는 NFT의 생성과 관련하여, 게임규제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메타버스의 탈 게임화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음¹²

-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의 환전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메타버스 생태계 내 NFT의 생성·거래·유통은 게임산업법상의 규제 위반 소지가 있음
- * 게임산업법 제2조 제1의2호에 따라 우연적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재산상 이익과 손실을 주는 게임은 사행성게임물로 분류됨
- NFT 형태로 지급되는 메타버스 생태계 내 경제적 보상이 NFT의 거래·유통을 통하여 환전으로 이어지는

12 이승민, “메타버스 플랫폼과 규제의 탈(脫) 게임화” 『신산업규제법제리뷰』 제22-2호, 한국법제연구원, 2022.4.29., 16~21면.

경우, 이는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가 될 수 있음

- 게임물의 이용으로 획득한 결과물의 직접적 환전 행위 외에도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전체가 금지 대상(제32조 제1항 제7호)이므로, 메타버스 생태계 내에서 지급된 NFT 마켓플레이스도 규제 대상이 됨
- 한편,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게임머니 등은 특금법상의 “가상자산”에서는 제외되며, 이러한 법률 구조에 따라 NFT는 특금법상의 가상자산 규제나 게임산업법상의 사행·환전 게임물 규제의 대상이 됨
- 다만, 우연적 요소보다 노력의 결과로 얻은 오락성 메타버스의 게임아이템이나 보상은 게임산업법상의 사행성 규제나 환전 규제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고(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7237, 7238 판결 참고), 이러한 게임아이템인 NFT의 경우 특금법상의 가상자산 정의에서도 제외됨

5. NFT 거래·유통 참가자와 DAO, OSP 등의 책임

(1) 발행·교환·유통 주체로서의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는 블록체인기술 기반의 자율조직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법제상 법인이나 회사의 지위를 가질 수 없고, 그 법적 형태를 「민법」상 조합이나 「상법」상 합작투자조합 내지 익명조합으로만 조직이 가능함

- 분산형 자율조직인 DAO를 단순히 공동사업을 위한 인적결합체로서의 조합으로만 파악하는 경우, 전자증권 형태의 양도가 가능한 토큰을 근거로 지분에 비례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의 조직(분산형 자율조직)이라는 수평적 이념 구조에 부합하지 않음¹³
- DAO의 의사결정이 보유 토큰 수에 기반한다는 점이나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 「민법」상 조합 보다는 「상법」상 회사에 유사한 특성을 가짐
- 미국의 버몬트주나 와이오밍주, 테네시주에서는 이러한 DAO를 유한책임회사의 법적 지위를 준용하여 블록체인기술 기반의 특성을 반영한 규정으로 설계하고 있음

□ DAO의 NFT 생성·교환·유통에 대한 책임 여부

13 김명아, 『탈중앙화금융(DeFi)의 기업·금융 규제 법적 연구 - 탈중앙화 기업·금융 규제 프레임워크』, 한국법제연구원, 2022.8.31., 34면.

- DAO에 대하여서는 현행 법 체계로는 「민법」상 조합이나 「상법」상 익명조합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밖에 없음
- DAO와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제도 즉, 법인의 주소와 연락처 기재 방식, 등기제도나 주주명부의 관리, 투자지분에 따른 권한 행사, 의결권 행사 등 현행 회사법 체계에 따른 제도들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려움
- 아직까지 NFT의 발행과 교환, 유통의 주체로서 DAO가 일정한 법적 지위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블록체인기술 기반의 생태계로 이어져 있다는 점에서 향후 DAO의 NFT 생성이나 거래, 유통과 관련한 법적 책임과 이익 분배, 의결권 행사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함

(2) NFT 거래·유통 플랫폼

1) 특정금융거래법 내지 자본시장법의 규제 적용 가능성

-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NFT 거래·유통 플랫폼 사업자는 그 거래·중개 방식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매매업, 가상자산교환업, 가상자산이전업, 가상자산보관·관리업, 가상자산중개·알선업 등의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게 됨
-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게 되면, 신고의무(특정금융정보법 제7조)를 지게 되나,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징역이나 벌금형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에 대한 반대해석). 따라서, NFT의 거래나 교환, 중개·알선 등을 영업으로 하지 않는 단순한 NFT 마켓플레이스의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무의 형사제재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임
 -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업자가 되는 경우,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법 제6조 제3항) 의무,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 관리, 예치금의 고유재산 구분 관리, 비실명 고객의 거래 제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영업목적 거래 금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를 위한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제한 기준 마련 및 시행 등의 조치(제8조) 의무 등이 적용됨
 - NFT 방식 조각투자자의 경우,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유통규제는 없기 때문에 투자중개업 유통규제 대상 사업자는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임. 다만, NFT의 특성에 따라 수익증권이나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게 되면 해당 NFT의 매매나 중개를 업으로 하는 NFT 거래·유통 플랫폼은 투자중개업자나 투자매매업자 인가(자본시장법 제11조 등)를 받아야 할 것이며, 금융투자업자로서의 의무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양한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를 지게 됨¹⁴

14 한서희, “대체불가토큰(NFT)과 법률적 쟁점”, 『신산업규제법제리뷰』, 제22-2호, 한국법제연구원, 2022.4.29., 49면.

2)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업자의 책임 적용 가능성

□ 「저작권법」 제2조 제30호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NFT 거래·유통 플랫폼의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저작권법」 제102조부터 제104조까지의 의무를 부담하게 됨

-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2호 바목 내지 제103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물의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하는 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즉시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위와 같은 조치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면책됨(「저작권법」 제102조 제2항). 블록체인의 특성상 특정 NFT에 대한 복제·전송 등의 거래를 중단은 어려운 점이 있음.
- NFT 거래·유통 플랫폼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과 관련하여, 중단 조치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가의 문제가 발생하며, 해당 중단조치가 필요한 NFT에 대하여 이용자들의 접근을 막는 별도의 조치는 가능할 것임
- 이 때, 이용자들의 접근을 막는 조치를 별도로 하지 않은 NFT 거래·유통 플랫폼에 대하여 책임 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제103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불법복제물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를 법원이 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단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 다만, 복제·전송의 재개(「저작권법」 제103조 제3항)와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NFT에 대한 접근을 막는 조치의 구현 시, 재개가 가능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저작권법」 제2조 제27호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으로서,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신고 의무가 주어짐

-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서에는 저작권대리중개 계약 약관과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을 포함한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저작권법 시행령」 제48조)을 첨부하여야 함

□ 한편, 「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에서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을 “저작권위탁관리업”으로 통칭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받는 수수료의 요율이나 금액,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이나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하고

있음(「저작권법」 제105조 제9항)

- NFT 거래·유통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이상이거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가 아닌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주어짐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일정 기간 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으며, NFT 거래·유통 플랫폼이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되는 경우 그 청약 철회권을 보장하여야 함. 그러나, 블록체인의 기술 기반의 NFT의 스마트컨트랙트와 관련하여서는 청약의 철회가 인정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3) 정보주체의 접근권 및 수정요청권, 삭제권 인정 여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내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따라 정보주체는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제2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를 삭제 조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 의무화 되어 있음
 - 그러나, 온체인 방식의 블록체인에 저장된 정보는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기술적으로 제너시스 블록을 통하여 별도로 개인정보나 사생활·명예와 관련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다만, IPFS(InterPlanetary File System)와 같은 P2P 노드의 경우, 중앙 노드의 제어가 없어 데이터를 각각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 삭제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음. 따라서, IPFS의 분산 파일 시스템은 정보의 삭제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삭제 조치가 불가능한 점에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음

III.

NFT의 거래·유통 원활화를 위한 규제 개선 과제

1. NFT의 민법상 물건성 판단 기준 및 배타적 지배권 등 물권적 권리의 적용

□ NFT는 데이터 값으로 표현되는 데이터의 일종이며, 스마트컨트랙트와 메타데이터로 구성됨. 이러한 NFT가 「민법」상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으로 파악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 그동안 「민법」 일부개정안(2019년 11월 18일, 김세연의원 대표발의)에서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나 데이터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무체물”로 수정하는 한편, 데이터 이전계약을 전형계약으로 신설하여 데이터를 소유권의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입법적 시도가 있었음
- 한편, 디지털콘텐츠로서의 NFT는 제3자의 개입 없이 전송이 가능한 점, 배타적권리의 설정이 가능한 무형물이라는 점 등에서 다른 유형의 데이터가 가지는 속성과 비교할 때, 보다 강력한 재산권적 특성을 지님¹⁵

□ UNIDROIT의 디지털자산에 관한 연구(Digital Assets and Private Law Study LXXXII – Digital Assets and Private Law Project)¹⁶에서는 배타적지배권(Control)의 개념과 구조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해당 연구에서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과 관련하여, 1) 지배의 변경에 대한 배타적 능력, 2) 타인에 의한 편익 취득의 방지에 대한 배타적 능력, 3) 지배권자의 편익 취득에 대한 능력으로

15 한서희, 앞의 글, 44~45면.

16 <https://www.unidroit.org/work-in-progress/digital-assets-and-private-law/> (2022.11.30. 최종검색)

유형화하고 있으며, 그 지배권에 관하여 타인과의 공유를 동의 또는 추진한 경우 내지 미리 프로그램된 경우(스마트컨트랙트 등)에는 배타적 지배권에 대한 예외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한 바 있음¹⁷

- 특정금융정보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데이터산업법, 게임산업법, 「저작권법」 등 다양한 법률의 우회적인 적용을 통하여 NFT의 속성과 법적 지위를 파악할 수 있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NFT 거래·유통 활성화에 불리한 측면이 있으며, 향후 「민법」 개정을 통하여 NFT의 물건성 인정 및 NFT 관련 별도 입법을 통하여 NFT의 생성·거래·유통 참가 당사자 간의 법적 지위와 관련 법률관계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채택해야 할 것임
- NFT의 생성·거래·유통에서는 미리 프로그램된 스마트 컨트랙트에 따르게 되므로, 코드 설계 단계에서부터 취소의 의사표시와 계약의 해제·변경, 원상회복 등 다양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거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NFT의 생성과 거래·유통상 발생할 수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스마트 컨트랙트를 계약의 한 유형으로 채택하도록 「민법」 제107조에서 제113조의 의사표시와 제527조 이하의 계약 관련 규정들에 대한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NFT 디지털작품에 대한 보호 범위 구체화

- 디지털콘텐츠로서의 NFT 아트와 관련하여,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에 대한 초상권자 및 퍼블리시티권 권리자와 발행자 및 인수인 간의 이익형량을 고려한 논의와 균형감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함
 - 디지털작품의 초상권, 저작권, 배타적지배권, 전시권 등에 대한 유형화와 각 유형별 권리자의 권리 범위와 선의의 제3자로서의 구매자에 대한 일정한 면책 등을 포함한 「저작권법」 제35조의 개정이 필요할 것임
 - 유형물 형태의 미술저작물 소유자와 NFT 작품 구매자 간 다른 지위를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실익이 없는 한, 원본의 ‘전시’를 위한 권리자 동의 규정과 디지털도록 방식의 복제·배포 등의 게시 행위의 허용 등 법적 지위를 동일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음

17 한서희, 앞의 글, 46~47면.

□ 또한, NFT 민팅·유통 과정에서 NFT 인수 계약에 해당 NFT가 표창하는 대상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재산권의 양수나 이용허락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법률관계와 당사자의 지위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NFT 생성·거래 시 스마트컨트랙트에 관련 권리 관계를 사전에 정하여 프로그래밍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이용 행위의 영리/비영리성과 공개/비공개 여부에 따라 단순 개인 소장용 목적의 비영리·비공개와 아바타나 프로필사진 등과 같은 비영리·공개 이용, 판매를 위한 디지털도록 등의 제작과 같이 보조적 상행위로서의 영리·공개 이용, 판매용 콜라보방식 디지털아트 제작을 위한 영리·공개 이용 등 다양한 경우에 대하여 각 권리 당사자에 대한 권리의 범위와 이용 조건, 책임 사항 등 구체적이고 상세한 법률관계를 포함한 내용이 NFT의 발행·거래·유통 각 단계별로 스마트컨트랙트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저작권법」에 저작자 대한 “추급권(Droit de suite)”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향후 NFT 미술품 등의 스마트컨트랙트 프로그래밍에 이러한 추급권을 설계함으로써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창작자가 NFT 작품을 드롭할 때, 해당 창작자(또는 저작자)에게 일정 비율의 수익이 발생하도록 프로그래밍하고, 최초 거래 이후에도 재판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자동으로 창작자(또는 저작자)에게 일정한 수익금이 지급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하여 창작자(또는 저작자)의 지위와 권한이 강화되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실무에서 현실 미술품과 NFT 작품에 대한 이익의 균형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EU에서와 같이 예술품 거래·유통의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고려하여 관련 제도를 장기적으로 설계해나가야 할 것임

3.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권리 강화

□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의 상표권 침해행위의 기준에 현실 상품과 디지털콘텐츠에 그 유사성이나 오인·혼동 가능성을 인정하는 유형 등에 관하여 상표권의 직접 침해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NFT 생성자에 대하여 상표권 등록을 장려하고, NFT 관련 상표 등록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제도적으로 구비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할 것임

□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데이터의 유형별로 “데이터 유형별(NFT/FNFT/데이터셋 등 디지털 자산 유형별) 거래 표준 계약서”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해당 계약서에는 데이터의 사용·공개 또는 제3자 제공 등 수익 창출 가능성에 대하여 유형별로 법적 지위와 권리 유형, 수익배분 관계가 포함되도록 하여, 각 참여 주체별 지위와 권리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임

4. NFT의 자산성과 유형별 기준 명확화

□ 조각투자예 NFT가 활용될 경우, 해당 NFT가 유틸리티형, 지급결제형, 증권형 등 어떤 형태의 토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규제의 내용이 달라지게 됨

- NFT 기능별로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각각의 NFT 유형에 대한 판별 기준과 규제 수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 가이드라인의 경우, 법 체계상 행정지도에 불과하여 법적 안정성과 규제의 지속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규정 또는 최소한의 규범적 행정작용(유권이나 비조치의견서 등 행정기본법상 행정작용)을 통하여 명확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임
- 현재로서는 NFT가 조각투자의 대상이 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이나 미국의 Howey Test 원칙 등을 고려하여 투자계약증권인지 판단을 받게 되고, 가이드라인이 법적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인지에 대한 다툼에 오랜 시간을 소비할 가능성이 있어 아직까지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
- 금융혁신지원법에 따라 NFT 민팅·유통 사업의 주체로서 금융혁신사업자로 지정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혁신사업자로 지정받겠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률의 제정·개정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 4년의 한시적 조치에 불과함
- 규제의 지속성과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서는 자본시장법 등 금융법 체계 내에 투자계약증권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채택하고, 투자계약증권 외의 NFT에 대하여서는 그 거래와 유통에 대한 별도의 체계를 명확하게 입법화해 나가야 할 것임

5. NFT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입법 논의 대상 확대

(1) NFT의 생성·교환·유통 주체로서의 DAO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새로운 법적 지위에 대한 법적 검토와 당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의 필요
 - 미국 와이오밍주, 버몬트주, 테네시주에서는 DAO에 대하여 ‘유한책임회사’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블록체인기술 기반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규정을 채택하고 있음
 - DAO의 설립과 자금조달, 의결권 행사, 운영자그룹과 단순투자자 간 책임과 법률관계, 자금청산·해산, 예외 규정 등을 채택하고, 그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여 DAO 참가자 및 NFT의 거래·유통 상대 당사자를 모두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2) DAO의 NFT 생성·교환·유통 관련 선관주의의무 및 책임 강화

- NFT 생성 및 거래·유통과 관련하여, DAO 법적 지위와 법률관계 등에 대한 논의 상황에 따라 각 NFT의 유형별로 권리행사의 주체 및 효력 부인과 선관주의의무 등 관련 법률관계의 효력에 대해 논의를 이어나 가야 할 것임
 - 실무적으로는 DAO 규약(정관, 백서)에 법적 근거와 당사자 간 권리·의무, NFT 등의 민팅시 수익구조 및 이익분배 등을 프로젝트별로 기재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야 함
 - DAO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국내에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각 참가 주체별 법적 지위와 선관주의의무, 효력의 부인 등에 관한 각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

6. NFT 거래와 유통에 관한 표준계약서의 마련

- 블록체인·NFT 기술, 계약서 및 저작권 표기 등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표준계약서 작성의무를 채택하고, 해당 표준계약 방식의 계약 체결시 약관규제법상의 원칙에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음
 - NFT 기술 및 블록체인기술에 내재된 위험성 고지 및 구체적인 설명
 - NFT의 생성·거래(교환)·유통 관련 법적 근거 및 적용 법률 및 구체적인 적용 규정
 - NFT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 종료 시, NFT의 이전·보관 절차 및 NFT 판매자·인수자의 권리·의무와 NFT

서비스 운영자의 의무 사항

- 해당 NFT 민팅 구조 및 대가지급, 수익 발생시 분배 구조 등에 대한 고지 및 수령 방법
- NFT 생성·판매 관련 메타데이터 및 스마트컨트랙트 유형별 표준 법률관계
- NFT 생성자와 판매자 및 구매자가 보유하는 권리의 범위와 유형, 소멸 및 추급권 관련 사항과 기준
- NFT 민팅, 구매, 인수, 교환, 판매, 재판매 등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동의(제3자 제공 포함) 및 민감정보 관련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개인정보처리방침 마련
- 해당 NFT가 증권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확인과 대상 NFT 구매자가 「소비자기본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법률에 따라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지와 사후구제 방안을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IV. 결어

□ NFT는 실물 자산에 대한 진본·원본 증명수단으로서 사용되기도 하고, 저작물에 대한 NFT로 민팅하기도 하며, 창작자가 직접 NFT 드롭을 함으로써 NFT가 표창하는 디지털콘텐츠와 일체화된 개념으로 민팅하기도 함

- NFT의 기능이나 유형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관점에도 불구하고, 대체불가능토큰인 NFT를 활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
- 메타데이터와 스마트컨트랙트로 이루어지는 NFT는 데이터로서의 속성을 가지면서도, 다른 유형의 데이터가 가지기 어려운 배타적 지배권이나 예술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경우도 있어 각 NFT를 하나의 유형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음
- NFT가 블록체인기술 기반의 Web3.0에서 더욱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구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메타버스 생태계의 발전에 따라 NFT의 거래·유통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 그러나, NFT를 규율하는 현행의 법체계는 NFT를 명확하게 규정하기에는 규제의 불명확성이 매우 강하고, NFT의 기술적 특성과 NFT 민팅·유통 참가자들의 수요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힘든 상황임
- 향후 NFT의 거래·유통 활성화를 위하여서는 당사자 간 법률관계의 명확화와 NFT의 법적 지위 확립, 블록체인기술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각 법률의 이행 가능성 확보 등 입법적 개선 과제가 산재함
- NFT가 가지는 디지털자산으로서의 속성 뿐만 아니라, 예술품 거래·유통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의 확장 측면과 Web3.0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NFT와 관련한 규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

참고문헌

REFERENCES

- 민경식·김관영·박진상, 『NFT 기술의 이해와 활용, 한계점 분석』, KISA Insight Vol.3., 한국인터넷진흥원, 2021.9.10.
- 유민호·임동만·아곤·한서희, 『NFT 투자의 정석』, 한스미디어, 2022.
- 김찬동 외, 『메타버스, NFT 저작권 쟁점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11.
- 최정규, "디지털전환과 NFT, 선제적 규제 개선 사항에 관한 소고(小考)", 『신산업규제법제리뷰』 제22-5호, 한국법제연구원, 2022.10.31.
- 이승민, "메타버스 플랫폼과 규제의 탈(脫) 게임화" 『신산업규제법제리뷰』 제22-2호, 한국법제연구원, 2022.4.29.
- 한서희, "대체불가토큰(NFT)과 법률적 쟁점", 『신산업규제법제리뷰』, 제22-2호, 한국법제연구원, 2022.4.29.
- 김명아, 『탈중앙화금융(DeFi)의 기업·금융 규제 법제 연구 - 탈중앙화 기업·금융 규제 프레임워크』, 한국법제연구원, 2022.8.31.
- 정영훈, "NFT(대체불가능토큰) 관련 주요 동향과 소비자 이슈", 『소비자정책동향』 제122호, 한국소비자원, 2022.
<https://www.unidroit.org/work-in-progress/digital-assets-and-private-law/> (2022.11.30. 최종검색)
- <https://wipo.int/edocs/lexdocs/laws/en/ie/ie141en.pdf> (2022.11.30. 최종검색)
-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01L0084> (2022.11.30. 최종검색)
- <https://www.wipo.int/treaties/en/ip/berne/> (2022.11.30. 최종검색)
- <https://www.law.go.kr> (2022.11.30. 최종검색)

이슈페이퍼 22-21-⑰

NFT의 거래·유통 관련 규제 현황과 입법적 개선 과제

발행일 2022년 11월 30일

발행인 김계홍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T. 044)861-0300 F. 044)863-9915

등록번호 1981. 8.11. 제2014-000009호

<http://www.klri.re.kr>

1. 본원의 승인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2. 이 책자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979-11-92875-01-9 93360

KLRI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비매품

ISBN 979-11-92875-01-9